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보

선람	기관의장

제777호 2022. 5. 4.(수)

고 시

○ 사천시 고시 제2022-89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 사천시 고시 제2022-92호 2022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 2

공 고

○ 사천시 공고 제2022-636호 공공하수도 점용 허가사항 공고---------- 4

입법예고

○ 사천시 공고 제2022-629호 사천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5

○ 사천시 공고 제2022-649호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7

○ 사천시 공고 제2022-660호 사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0

회람										

발행 : 사천시 / 편집 : 공보감사담당관/ ☎ 831-2215 / FAX 831-6012

사 천 시 공 보

제777호

사천시 고시 제2022-89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신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4일

사 천 시 장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내용

지구명	위 치	지정 내용			지정사유	비 고
		유형	등급	면적(㎡)		
고읍·선인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고읍리 608-58번지 일원	침수위험	가	433,549	외수위(사천강) 상승시 내수배제 불량에 의한 반복적인 주거지 및 농경지 침수가 발생	신규

2. 기 간: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5항에 따른 지정 해제 시까지

3. 이해관계인은 사천시 재난안전과(055)831-3317)에 비치된 관계 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1부. 끝.

사천시 고시 제2022-92호

2022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의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 2022년 종합소득(확정신고)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합니다.

2022. 5. 4.

사 천 시 장

1.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1)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 상 자	코로나19 피해 영세 자영업자 등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그 외 일반납세자
연 장 기 간	2개월	3개월
연장된 납부기한	2022. 8. 31.	2022. 8. 31.

2)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상세)

구분	제외대상
손실보상 대상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정)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제외
영세 자영업자 (외부조정 미만자)	전문직・부동산임대・대부업・호황업・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제외

2.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신청연장

○ 신고・납부기한 신청연장

대 상 자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로 종합소득세의 기한연장 통지를 받은 자
연장된 신고기한	종합소득세의 연장된 신고기한과 동일
연장된 납부기한	종합소득세의 연장된 납부기한과 동일

3. 국세청으로부터 신고・납부 기한의 연장・승인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종합소득세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신청없이 자동 승인됨을 알려드립니다.

4.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고시문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사천시청 세무과(☎055-831-28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천시 공고 제2022-636호

공공하수도 점용 허가사항 공고

「하수도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공하수도 점용 허가사항을 공고합니다.

2022. 5. 4.

사 천 시 장

1. 점용허가번호 : 제2022- 1호

2. 점용허가일 : 2022년 4월 18일

3. 점용의 목적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가설건축물)의 설치를 위한 점용

4. 점용의 장소

○ 사천시 사남면 유천리 917

5. 점용의 면적 : 350.62㎡

6. 점용의 기간 : 2022. 4. 18. ~ 2025. 4. 18.

7.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 주소

가. 성 명 : 에스앤케이항공(주)] 대표이사 이철우

나. 주 소 : 사천시 사남면 공단1로 107

사천시 공고 제2022-629호

「사천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4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1. 제정이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서 조례로 위임된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에 관한 사항(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해양수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 해양수산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3127, FAX: 831-603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사천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사천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의 안 번 호	2022 - 제 호

제출연월일: 2022. 4. .
제 출 자: 해양수산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정이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서 조례로 위임된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에 관한 사항(안 제2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2. 4. . ~ 2022. 5.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위임된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 ① 사천시장은 제1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해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
   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
   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

한 토지의 가격

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

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배수펌프의 용량

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배수관의 지름

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돌·모래의 시장가격

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돌·모래의 시장가격

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하천·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점용료 · 사용료의 산정방식(제2조제1항 관련)

구 분	산정방식(단위 : 연간)
1. 잔교(棧橋: 선박이 부두에 닿도록 구름다리 형태로 만든 구조물) · 호안(기슭 · 둑 침식 방지 시설) · 소형선 부두(야적장을 포함한다) · 방파제 · 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설치(관로 매설을 포함한다)를 위한 점용 · 사용[하천 · 구거 부지(溝渠)를 주거용으로 점용 ·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나목 및 다목을 제외한 인공구조물의 경우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3. 다만, 「도로법」 제68조제3호에 따른 사업(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인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로 한다.
	나. 해상 교량의 교각 상판(교각 면적은 제외한다), 해저터널(「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해저케이블은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로 한다.
	다. 케이블카, 전력선 및 로프형 레저시설 등 공유수면과 맞닿지 않는 수면 상부를 점용 ·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로 한다.
2. 조선용 선가대(선박을 땅 위로 끌어 올려놓을 수 있는 구조물 및 설비) 또는 선박의 수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장안벽(艤裝岸壁), 선거(船渠) 등의 시설물 설치를 위한 점용 · 사용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
3. 물을 끌어 들이기 위한 점용 · 사용	가. 전기사업용수 ㎥/초당 연액 20만원 나. 가목 이외 용수 관의 지름 100mm 이하: 관의 지름 10mm당 월액 1만원 관의 지름 100mm 초과 200mm 이하: 월액 12만원 관의 지름 200mm 초과 300mm 이하: 월액 16만원 관의 지름 300mm 초과 400mm 이하: 월액 22만원 관의 지름 400mm 초과 500mm 이하: 월액 28만원 관의 지름 500mm 초과 600mm 이하: 월액 38만원

	관의 지름 600mm 초과 700mm 이하: 월액 50만원 관의 지름 700mm 초과 800mm 이하: 월액 60만원 관의 지름 800mm 초과: 월 최대 취수 가능량을 다음 공식에 따라 산정하여 1천㎥당 200원씩 적용한 금액 초당 끌어들이는 물의 양 = $\frac{\text{관의 지름}^2 \times \text{관내유속(m/sec)}}{146^2 \times 60}$
4.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매립용·성토용 또는 골재용으로 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채취를 위한 점용·사용	가. 해당 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이 전년도 10월 중에 2회 이상 조사한 가격을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조정을 거쳐 고시하거나 특별자치시장이 전년도 10월 중에 2회 이상 조사한 가격을 조정하여 고시한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의 도매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30. 다만, 해당 조사가격이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30 1) 담당 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2)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협회가 조사한 가격 3) 골재 관련 가격조사기관 중 2개 이상의 기관이 조사한 가격의 산술평균치 4) 기획재정부장관이 승인한 2개 이상의 가격조사기관에서 산출한 가격의 산술평균치 나.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허가자 또는 같은 법 제34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골재채취단지관리자가 전년도 10월 중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승인한 가격조사기관 중 2개 이상의 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가격(조사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징수 기준일부터 3개월 이내에 조사한 가격을 말한다)으로서 채취된 골재가 인근의 특별자치시·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군·구에서 판매된 도매가격 평균치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값을 곱한 값 1)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점용

	·사용허가 기간에 대해서는 100분의 15 2) 2021년 1월 1일 이후의 점용·사용허가 기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다.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의 채취행위가 동시에 어장·어항 또는 항만구역을 준설하는 목적을 갖는 경우에는 가목의 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10
5. 식물의 재배 또는 벌채를 위한 점용·사용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 다만, 인접한 토지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근의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토지의 가격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25까지 낮출 수 있다.
6. 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사용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 다만, 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사용으로서 그 원자재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0.5로 한다.
7.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따른 광물채취 및 탐사를 위한 점용·사용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 다만, 광물채취행위가 어장·어항 또는 항만구역을 준설하는 목적을 갖는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5로 하되, 광물을 채취할 때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흙·돌·모래·자갈을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로 활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를 가산적용한다.
8. 준설토를 해양에 배출하기 위한 점용·사용(「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폐기물배출해역에 배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준설토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량(㎥)당 100원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규정한 목적 외의 점용·사용	가. 스케이트장·운동장·수영장·대기장·탈의장·골프장을 위한 점용·사용은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5 나. 그 밖의 경우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점용·사용에 따른 간접 점용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

비 고

1. "토지가격"이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점용료·사용료 부과·징수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공유수면관리청이 결정한다.
2.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적용한다. 이 경우 인접한 토지의 필지별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접한 길이를 고려하여 가중평균하여 적용한다.
3. 위 표 제4호가목의 도매가격은 채취지역에서의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정하고,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에 관한 가격조사는 둘 이상의 지역(채취지역 관할 특별자치시·시·군·구를 말하며, 가격이 없는 경우 인접한 특별자치시·시·군·구를 포함한다)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초에 해당 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조사가격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조정을 거쳐 고시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해당 결정금액 이하로 낮추어 조정할 수 있다.
4. 점용료·사용료를 정할 때에 1년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일할(日割)로 계산한다.
5. 점용면적에 1㎡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사천시장이 점용료·사용료를 산정한 결과 점용료·사용료가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관 련 법 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징수)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나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제3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또는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사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수면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사천시 공고 제2022-649호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4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의 ‘정신질환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 제한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정신질환 또는 정신장애를 이유로 공공시설의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사천바다 케이블카 승차방법, 이용료의 면제, 이용료의 할인, 이용료의 반환, 이용제한 규정 개선(안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및 제16조)

나.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행구간 편도구간 추가(안 별표 1)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관광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관광진흥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785, FAX : 831-6024)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사 천 시 공 보

제777호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2 - 제 호

제출연월일: 2022. 5. .
제 출 자: 관광진흥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의 ‘정신질환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 제한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정신질환 또는 정신장애를 이유로 공공시설의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사천바다 케이블카 승차방법, 이용료의 면제, 이용료의 할인, 이용료의 반환, 이용제한 규정 개선(안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및 제16조)

나.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행구간 편도구간 추가(안 별표 1)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2. 5. 4. ~ 2022. 5. 24.(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케이블카 왕복”을 “케이블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최초 탑승지인 대방정류장”을 “대방정류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경유지인 각산”을 “각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1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승차방법과 운행구간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제11조제3호 중 “아동(단, 보호자 1명당 아동 1명 이용료 면제가능, 초과아동인원에 대하여는 소인요금 적용)”을 “아동”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5호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를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제1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소속도시 주민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이용자가 자신의 귀책 사유로 인해 케이블카 이용을 중단하는 경우 잔여 구간에 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6조제1호 중 “정신질환이나 감염성질환”을 “감염성질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보호자를 동반한 만 3세 미만의 아동 중 보호자 1명당 2명을 초과하는 아동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승차방법) ① 케이블카 왕복 탑승권을 가진 승객의 승차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최초 탑승지인 대방정류장에서의 승차는 탑승권에 표기된 탑승번호순으로 한다. 2. 경유지인 각산 및 초양정류장에서의 승차는 승차장에 도착하여 기다린 순서로 한다. ② 케이블카 편도 탑승권을 가진 승객은 각산정류장에서만 이용가능하며, 승차는 발권 후 승차장에 도착하여 기다린 순서로 한다. <신 설>	제9조(승차방법) ① 케이블카 ----------. 1. 대방정류장----------. 2. 각산 ----------. <삭 제> ③ 제11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승차방법과 운행구간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제11조(이용료의 면제) 시장은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2. (생 략) 3. 보호자를 동반한 만 3세 미만의 아동(단, 보호자 1명당 아동 1명 이용료 면제가능, 초과아동인원	제11조(이용료의 면제) ----------. 1.·2. (현행과 같음) 3. ---------- 아동

에 대하여는 소인요금 적용)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2조(이용료의 할인) (생 략)	제12조(이용료의 할인) (현행과 같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별표 3에 따라 할인 이용료를 적용한다. 다만,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①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6. ~ 11. (생 략)	6.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소속 도시 주민
12. (생 략)	13. (현행 제12호와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이용료의 반환) ① (생 략)	제13조(이용료의 반환)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용자가 자신의 귀책 사유로 인해 일부 사용된 탑승권의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당일 영업시간 내로 한정한다)에는 사용된 이용권의 차액을 반환한다.	② 이용자가 자신의 귀책 사유로 인해 케이블카 이용을 중단하는 경우 잔여 구간에 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6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6조(이용제한) ----------

케이블카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1. 정신질환이나 감염성질환이 있는 사람	1. 감염성질환----------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보호자를 동반한 만 3세 미만의 아동 중 보호자 1명당 2명을 초과하는 아동
7. (생 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별표 1]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행구간(제3조 관련)

운행구분	기점	경유		종점
		1	2	
왕 복	대방정류장	초양정류장	각산정류장	대방정류장
편 도	각산정류장	-		대방정류장
편 도	대방정류장	-		초양정류장

*대방→초양구간은 아라마루아쿠아리움 통합권에 한해서 운행한다.

[별표 2]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제10조 관련)

구 분		왕복요금(원)		편도요금(원)		비 고
		개인요금	단체요금	개인요금	단체요금	
일반 캐빈	대인	15,000	13,000	9,000	7,000	1명 요금
	소인	12,000	10,000	6,000	4,000	1명 요금
크리스탈 캐빈	대인	20,000	18,000	12,000	10,000	1명 요금
	소인	17,000	15,000	9,000	7,000	1명 요금

※ 1. 단체는 20명 이상을 말한다.

2. 대인은 만 13세 이상의 청소년과 성인, 소인은 만 3세(36개월)이상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를 말한다.

3. 왕복권을 발권하여 편도구간만 이용하더라도 잔여구간에 대한 금액을 반환하지 않음.

4. 보호자를 동반한 만 3세 미만 아동의 이용료는 면제되나 보호자 1명당 아동 2명 이하 탑승 가능함.

5. 아라마루아쿠아리움 등 타 시설과의 연계관광 통합권 이용료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별표 3]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할인 이용료(제12조 관련)

구 분		일반캐빈	크리스탈캐빈	비 고
사천시민, 사천시 국내 자매도시 주민	대인	10,000원	15,000원	1명 요금
	소인	7,000원	12,000원	1명 요금
국가보훈대상자		12,000원	17,000원	1명 요금
장애인		12,000원	17,000원	1명 요금
경로우대자		13,000원	18,000원	1명 요금
남해안남중권 발전협의회 소속도시 주민	대인	12,000원	17,000원	1명 요금
	소인	9,000원	14,000원	1명 요금

※ 1. 이용료 할인은 왕복 요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2. 사천시민은 사천시에 주소를 둔 주민을 말한다.

3. 사천시 국내 자매도시 주민이란 매표일 현재 자매도시 협약이 체결된 시·군·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4. 장애인은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명도 장애인과 동일하게 이용료를 할인하여 적용한다.

5. 국가보훈대상자란 제12조제1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이용료 할인은 중복할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7.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8. 연계시설 이용자 등에 대한 이용료의 할인율은 30% 이내로 한다.

9.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소속도시 주민이란 매표일 현재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소속 시·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사천시 공고 제2022-660호

「사천시 체육진흥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4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2022.2.3.)으로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의무 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천시체육회와 사천시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규정 개정(안 제1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문화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문화체육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410, FAX: 831-601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사천시 체육진흥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사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2 - 제 호

제출연월일: 2022. 5. .
제 출 자: 문화체육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2022.2.3.)으로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의무 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사천시체육회와 사천시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규정 개정 (안 제18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국민체육진흥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2. 5. . ~ 2022. 5.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조할 수 있다”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체육회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사천시체육회, 사천시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 4. (생 략) ②·③ (생 략)	제18조(체육회에 대한 지원) ① ---------- ---------- ---------- ---------- 지원하여야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관 련 법 규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하여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윤리센터,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20. 2. 4., 2020. 12. 8.>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12. 8., 2022. 2. 3.>

[전문개정 2016. 2. 3.]

[시행일: 2022. 8. 11.] 제18조